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진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3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진성준ㆍ허 영ㆍ위성곤

유동수 · 김현정 · 송재봉

강선우 • 주철현 • 이학영

정을호 · 강훈식 · 박희승

안태준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의 포획·채취 또는 살상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하천변, 공원 인근, 주택가 등에서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뱀이 출현하여 반려견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거나 감염시키는 사례, 사람을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. 현행법에는 야생동물의 포획·채취의 가능 범위 중 하나로 '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'를 명시하고 있는데, 서울시 등에 따르면 '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'라는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수변 및 공원 길가등 다중시설에 출현한 뱀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하여 야생에 방생하는 등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(제19조제4항제1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간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9조(야생생물의 포획・채취	제19조(야생생물의 포획・채취		
금지 등) ① ~ ③ (생 략)	금지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		
	<u></u> 이 교		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		
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			
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1의2.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		
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		
	한 법률」 제2조제6호나목에		
	따른 공간시설 등 여러 사람		
	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		
	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		
	끼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		
	포획하는 경우		
2. ~ 8. (생 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		
⑤・⑥ (생 략)	⑤・⑥ (현행과 같음)		